##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48 발의연월일: 2025. 4. 8.

발 의 자 : 임종득·강대식·강선영

유용원 • 한기호 • 서천호

박덕흠 • 신동욱 • 박상웅

이인선 · 이헌승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의 복무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제7항 신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중 정해진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장된 복무기간 중의 보수는 제31조제5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⑥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
	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중 정해진 연가
	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다.
<u> &lt;신 설&gt;</u>	<u>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u>
	장된 복무기간 중의 보수는 제
	3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u>액 지급할 수 있다</u> .